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7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박희승 · 김 윤
박해철 · 박민규 · 이학영
장종태 · 복기왕 · 양부남
이수진 · 최혁진 · 남인순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·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.

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·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신설 등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)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·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(이하 “정보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
2. 감염병 예방·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·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·기능개선·관리·교육·상담·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
3. 감염병 예방·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·통계 관리 등
4. 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·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
5. 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6. 감염병 예방·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프로그램 개발
지원

7. 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·홍보

8. 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

9. 감염병 신고·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

10.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
11.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
사항

④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
다.

⑤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
단체, 교육·연구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
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⑧ 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질병관리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제

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”를 “시·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”으로 한다.

제76조의6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정보원에 근무하는 임직원

제78조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,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제74조”를 “제7조의2제8항 또는 제7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·운영)</u> ① <u>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·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(이하 “정보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 <u>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</u> <u>③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</u> <u>2. 감염병 예방·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·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·기능개선·관리·교육·상담·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3. 감염병 예방·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·통계 관리 등</u> <u>4. 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·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</u>

5. 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 6. 감염병 예방·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
 7. 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·홍보
 8. 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
 9. 감염병 신고·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
 10.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 11.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, 지

	<u>방자치단체, 교육·연구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 <u>⑦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⑧ 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제8조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) ① <u>질병관리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.</u> ②·③ (생략) 제76조의6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제8조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) ① <u>시·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6조의6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-----

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신 설> <u>1. · 2.</u> (생략) 제7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u>1. · 2.</u> (생략) <u>3.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</u>	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정보원에 근무하는 임직원</u> <u>2. · 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제7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<u>2. · 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<u>1. 제7조의2제8항 또는 제74조-</u> ----- ----- -----
---	---